

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510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4월 29일

제안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「학교폭력예방법」상 정의 규정이 변경되었음에도 조례가 시의적절하게 개정되지 않아 법률과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상황이므로,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안 제2조제2호 중 “사이버 따돌림”을 법률상의 표현으로 수정하고자 함.
- 안 제6조제3항의 근거가 되는 「학교폭력예방법」 제16조의4제3항이 2025년 9월 19일에 시행되는바, 부칙의 조례 시행일을 법 시행일에 맞추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사이버 따돌림”을 “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)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”으로 수정함(안 제2조제2호).
- 부칙 안 시행일을 “공포한 날”에서 “2025년 9월 19일”로 수정함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호 중 “사이버 따돌림”을 “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
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)을 이
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”으로 한다.

부칙 안 시행일을 “공포한 날”에서 “2025년 9월 19일”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“사이버 폭력”이란 「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, <u>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</u>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----- ----- ----- ----- 사이버 따돌림, <u>딥페이크 영상 등(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·가공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)을 제작·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 1. (개정안과 같음) 2..----- ----- ----- ----- <u>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)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, 딥페이크 영상 등(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·가공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)을 제작·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</u> ----- ----- -----.

현행	개정안	수정안
3. ~ 5. (생략) 제6조(사업 및 지원) ① · ② (생략) <u><신설></u> 부칙 이 조례는 <u> 공포한 날</u>부터 시행한다.	3. ~ 5. (현행과 같음) 제6조(사업 및 지원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교육감은 「<u>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</u>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학생,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「<u>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</u>」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부칙 (현행과 같음)	3. ~ 5. (개정안과 같음) 제6조(사업 및 지원) ① · ② (개정안과 같음) ③ (개정안과 같음) 부칙 ----- <u>2025년 9월 19일</u> -----.

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”를 “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)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, 딥페이크 영상 등(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·가공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)을 제작·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”로 한다.

제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교육감은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학생,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5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(생략) 2. “사이버 폭력”이란 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행위로 <u>사이버 따돌림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·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</u>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. 3. ~ 5. (생략) 제6조(사업 및 지원) ①·②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-----<u>정보통신망(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)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따돌림, 딥페이크 영상 등(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얼굴·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·합성·가공한 촬영물·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말한다)을 제작·반포하는 행위 및 그 밖에 ---.</u> 3. ~ 5. (현행과 같음) 제6조(사업 및 지원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교육감은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서는 피해학생, 그 보호자 또는 피해학생이나 보호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의 요청 없이도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3</u>

현행	개정안
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<u>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</u> 부칙 ----- 2025년 9월 19일-----.